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1. 26 선고 2024가단7825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C

피고D

변론 종결2024. 11. 12.

판결 선고2024. 11. 26.

##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1. 1. 27. 접수 제12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배예선**

별지